

 국토교통부	<h1>보도참고자료</h1>		
	배포일시	2022. 2. 23.(수) / 총 8매(본문6, 참고2)	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	교통안전정책과	·과장 강성섭, 사무관 장상준 ·☎ (044) 201-3230, 3867
	국무조정실	국민생명지키기 추진단	·팀장 황세은, 사무관 금동선 ·☎ (044) 200-2555, 2559
	행정안전부	안전개선과	·과장 김정훈, 사무관 송호권 ·☎ (044) 205-4210, 4219
	경찰청	교통안전과	·과장 이서영, 경정 조재형 ·☎ (02) 3150-2052, 2152
보도일시		2022년 2월 23일(수) 16:30 이후부터 보도 가능합니다.	

「2022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」 범정부 수립·추진

- 보행자·고령자 및 이륜차 등 안전 취약분야 집중 개선 -

- ◆ **[안전체계]** 제한속도 하향·일시정지 강화 등 **보행자 최우선 체계**
- ◆ **[맞춤관리]** 고령자 맞춤형 대책·**배달 이륜차** 등 안전관리 강화
- ◆ **[안전문화]** 국민참여 등 친밀도 향상을 통한 **교통안전 문화 정착**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는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**교통안전 선진국**으로 도약하기 위해, 행정안전부(장관 전해철) 및 경찰청(청장 김창룡) 등 관계기관과 함께 「**2022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**」을 수립*하였다.

* 국민생명지키기 협의회: 2.23(수), 국무조정실장 주재 + 국토부·행안부·경찰청 참석

○ 이번 대책은 범정부 차원의 국민생명지키기 프로젝트* 일환으로, 보행자 최우선 교통안전 체계를 보다 견고히 하고 고령자 및 이륜차 등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개선을 위해 수립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* 국민생명지키기 프로젝트('18년~): 교통안전·산재·자살 등 3대 분야 사망자 감축을 위해, 국무조정실을 컨트롤타워로 관계부처 합동 대책 추진

① 보행자 최우선 교통안전 체계 구축

【 제한속도 하향 및 일시정지 의무 강화 】

- 보행량이 많아 차량과 보행자가 빈번하게 섞이고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주택가 등 생활밀착형 도로(골목길 등)에 대해 '보행자 우선 도로' 개념을 도입하고, 제한속도를 20^{km/h} 이하로 설정할 수 있게 한다.

【 보행자 우선도로 해외사례 】



• 네덜란드: 본엘프 제한속도 20km/h



• 영국: 홈존 제한속도 10mph(16km/h)

- 국도·지방도의 농어촌 지역 등에 대해서는 '마을주민 보호구간'을 제도화한다. 이를 통해 70~80^{km/h}로 운영 중인 제한속도를 50~60^{km/h}로 조정하여 농어촌 지역 고령자 등의 보행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.
- 또한, 앞으로는 횡단보도, 교차로, 보·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 도로에서 보행자 보호를 위한 일시정지 의무가 강화되기 때문에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, 아래 사항을 위반할 경우 범칙금 5만원 내외 및 벌점 10점이 부여된다.
 - 우선,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.
 - 또한, 교차로에서 운전할 때에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는 등 사고 빈도·위험성이 높았던 점을 고려하여,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가 새롭게 도입된다.

【 차량신호 적색 / 보행신호 적색 】



【 차량신호 적색 / 보행신호 녹색 】



【 차량신호 녹색 / 보행신호 녹색 】



* 그래픽: 연합뉴스 제공

- 아울러,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 전체 구간을 통행할 수 있도록 통행우선권을 부여하고, 운전자는 보행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서행·일시정지하도록 개선된다.

【 보행자 사고예방을 위한 단속체계 강화 】

- 음주운전·신호위반·속도위반 등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연중 확대되는 한편, 일반국민으로 구성된 공익제보단을 확대 운영하여 민관 합동 단속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.
- 속도위반·신호위반 등 보행자를 위협하는 고위험 운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누진제 도입을 추진하고,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면허 재취득 기간을 강화*해 나갈 계획이다.

* (現)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시 결격기간 5년 → (改) 결격기간 10년

- 또한, 안전운전을 위한 보험제도도 개편된다. 음주운전·무면허 및 뺑소니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가 운전자에게 보험금 전액을 구상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,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최대 10%까지 할증될 예정이다.
- 반면에, 안전운전을 실천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인을 검토해 나간다. 차선유지 장치 등 안전장치를 장착한 운전자를 포함하여, 운행기록 정보 확인을 통해 안전운전이 확인되는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운수 종사자에 대해서는 보험할인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예정이다.

② 고령자 신체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 등

- '노인 보호구역'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보호구역 지정기준을 확대한다. 기존에는 복지시설 등 고령자 이용하는 일부 시설물에 국한되어 보호구역이 지정되었으나, 이를 개선하여 고령자 보행이 빈번하여 사고우려가 높은 장소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.
-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단속장비 및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*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며, 무엇보다 지자체로 하여금 지역특성에 맞는 고령 보행자 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체계적으로 고령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.
- * (예) 스킨존: 단속장비, 신호기, 과속·미끄럼 방지시설, 안전표지 등 의무 설치
- 아울러, 고령 보행자의 느린 걸음속도로 인하여 시간 내에 횡단 보도를 건너지 못했을 때에는 이를 감지하여 녹색신호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스마트 횡단보도를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.
-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면허제를 중장기적으로 도입한다. 시간대(야간) 및 장소(고속도로 등)에 따라 고령자 운전을 제한하거나, 안전운전 보조장치 장착 등을 조건으로 면허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검토된다.
- 또 다른 교통약자인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는 '어린이 보호구역' 표준 모델을 개발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, 안전시설 설치 등 정비를 지속 추진해 나간다. 또한,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받고 있는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을 전면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.

③ 배달 이륜차 및 사업용 차량 등 안전관리 강화

- 현재 자유업으로 운영되는 이륜차 배달업은 전반적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상황이다. 올해는 안전관리 등 서비스 품질이 우수한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제도를 시행하고, 향후 등록제로 전환*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간다.
- * (인증제) 업체의 신청에 따른 인증 → (등록제) 업체는 필히 배달업 등록

- 동시에, 배달 이륜차에 대한 **비싼 보험료 부담을 완화**하고, 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해 **배달업 공제조합 설립**을 추진할 예정이다.
- 배달 이륜차를 포함하여 **전체 이륜차에 대한 안전을 향상**하기 위해, 차량에만 적용 중인 **안전검사 제도**를 이륜차에도 적용하여 **주기적인 안전관리**가 가능하도록 하고, **정비업**을 새롭게 도입하여 **적정 장비 및 인력**을 갖춘 자가 **전문적인 서비스**를 제공하도록 한다.
- 또한, 이륜차 단속 등을 강화하기 위해 **번호판 체계를 개편**하여 시인성이 향상되도록 하고, **번호판 미부착 및 불법튜닝, 교통법규 위반**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경찰청이 **합동단속**을 확대할 계획이다.

【 이륜차와 자동차 번호판 체계 비교 】



- 화물차 등에 대해서는 지난 1월 범정부 합동으로 마련한 「**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**」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. 특히, 화물차에 대한 **상시·기동 단속인력**을 확보하여, **졸음운전(휴게시간) 확인 장치** 및 **적재불량** 등을 거점별로 단속한다.

④ 교통안전 문화 확산 및 범정부 추진체계 강화

- 보행자가 최우선으로 보호받기 위한 **안전문화 확산**에도 박차를 가한다. **보행자 안전을 핵심 메시지**로 횡단보도 일시정지 강화 등을 중점 홍보하고, **이륜차·화물차 및 고령자·어린이** 등 대상별 맞춤형 홍보를 확산할 계획이다.
-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**관계부처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교통안전 협의체**를 활성화하여 보완사항을 지속 발굴·개선하고, **지역 단위**에서도 **교통안전을 강화**하도록 **현장점검 및 협력**을 강화해 나간다.

-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“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책무”라고 하면서, “OECD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- 아울러, “교통사고 감축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, 국민들께서도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, 상대방을 배려하는 안전 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 줄 것”을 강조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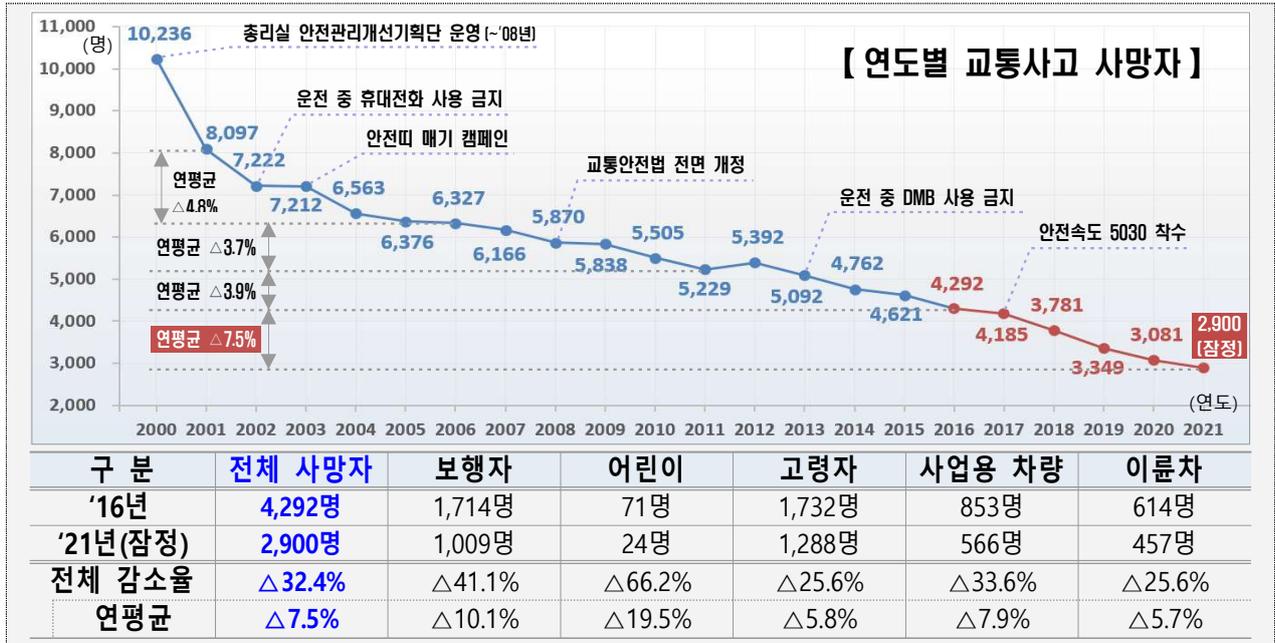


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 장상준 사무관(☎ 044-201-3867),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송호권 사무관(☎ 044-205-4183), 경찰청 교통안전과 조재형 경정(☎ 02-3150-215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1

지난 5년 교통사고 사망자 분석

□ 그간,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정부의 역량을 집중한 결과, 교통사고 사망자는 '16년 4,292명에서 '21년 2,900명(잠정)으로 감소하여 통계 작성 이래 최소치이자 역대 처음으로 2,000명대에 진입



○ 안전속도 5030 등 교통안전 패러다임을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한 결과 보행 사망자가 40%(연 10.1%) 이상 감소했으며, 어린이(연 19.5%), 사업용 차량(연 7.9%), 고령자(연 5.8%), 이륜차(연 5.7%) 順으로 분야별 교통사고 사망자 전반적으로 감소

□ 그러나,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인구 10만명당 사망자(6.5명, '19년)는 OECD 회원국(평균 5.2명) 중 중하위권이며, 영국·일본 등 교통안전 선진국에 비해 사망자가 2배 이상 많아 대책 마련 시급

○ 특히, 보행 사망자 및 고령 사망자 비율은 OECD 평균의 2배에 가깝고, 이륜차 사망자는 최하위권으로 각별한 관리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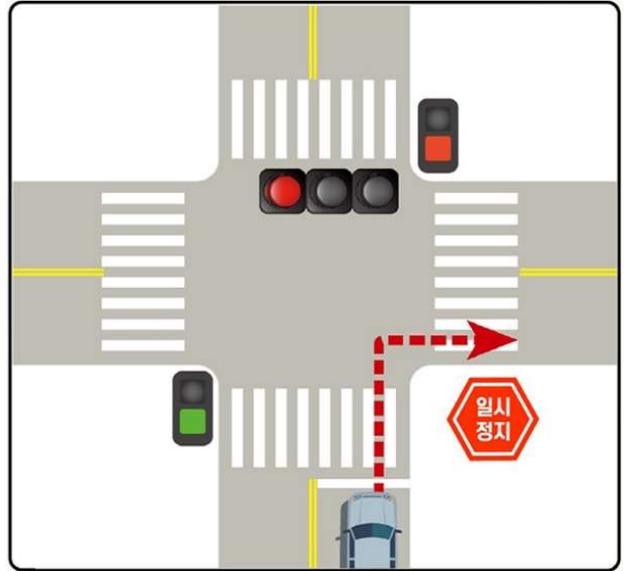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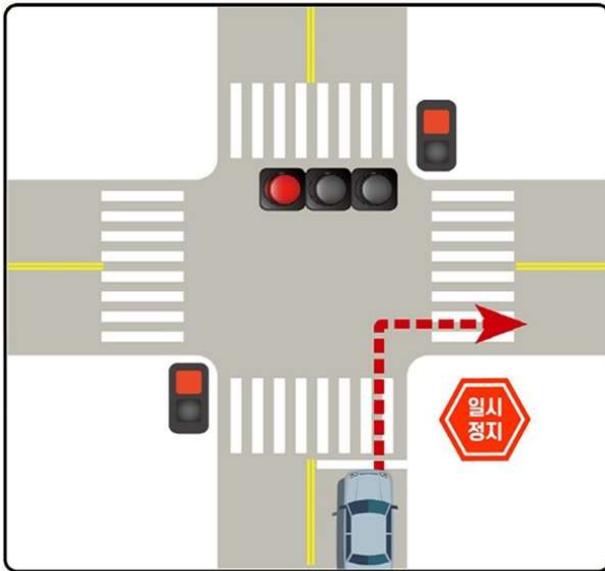


참고 2

차량 운전시 교차로 통행방법 안내자료

1.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

☞ 보행신호와 상관없이 일시정지하고,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 후 우회전



2.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

☞ 보행신호가 녹색일 때(보행자 有) 일시정지하고, 보행통행 종료 후 우회전

☞ 다만, 보행자가 없거나 보행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는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

